

法律(消費者)聯盟

WWW. GOODLAW.ORG

(우) 08052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코오롱에스틴 10층 1001호 전화. 02)523-8760 E-MAIL:GOODLAW@GOODLAW.ORG

법률(소비자)연맹 발표, 국회의원 의정활동(현 21대 3개년) 조사분석 시리즈(8) 3차년도성적

국회의원(21-3) 의정활동 성적은 3년 연속 “D” 학점(64.52점)

- 세계 일등국, 자유·민주·법치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민주시민의 공정성감시(권리·책무) 운동
1. 헌법 제1조 제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헌법 전문-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한다...
 3.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2002.3.7.신설-국회법 핵심>
 4. 형사소송법 제223·234조, 소비자기본법 제4조-우리는 주권자·유권자·납세자·소비자·당사자로서 고소·고발권, 알권리·의견반영권, 단체조직, 각종 청구권 등 관계법에 의거한 권리의무와 책임

국회의정활동 종합평가회 및 헌정대상 시상식 : 8월 16일(수) 16시, 국회헌정기념관(박물관)대강당 제21대 3년간(20.5.30.~23.5.29.) 의정활동을 조사·분석·평가하면서 3차년도(22.5.30.~23.5.29.) 의정 성적 우수의원 75명(헌정대상) 선정

- <입법활동-27매 보도>대한민국 최고기관인 국회, 그 국회 4대기능 중 중요기능인 입법분야
 - ▶ 상임위 대안에 원법안 대표발의자 성명 명기하여 책임입법 강화하라
- <본회의 출석률-26매 보도>출석률은 'A'(93.39%), 재석률은 'C'(70.27%)학점 / 출석도장찍고
 - ▶ 의원이 “무단 결석시 ‘국회의원 수당’ 감액규모를 대폭 늘려라”
- <대정부질문-20매 보도>정부통제 중요기능임에도, 여·야간 정쟁만 난무
 - ▶ 대정부질문 경과보고서 및 대정부질문 국회내 부서 마련 평가시스템 구축
- <상임위원회-17매 보도>본회의 출석률(93.39%) 보다, 낮은 상임위 출석률(89.98%)
- <핵심기구-소위원회-29매 보도>제21대 국회 3개년, 회의실태 엉망 법안심사소위 월3회 안지켜
 - ▶ 대표발의의원의 ‘법안소위’에서의 진술의무화 등 외부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등 확대
- <법안투표-13매 보도>국회의원이 법안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중대한 입법책임을 방기하는 행태
 - ▶ 법사위 통과 후 하루 만에 본회의 처리가능<국회법 93조의2>케 한 것 개정
- <윤리특위-9매 보도>제21대 국회, 윤리특위 심사 징계처리는 ‘0’ 건 - 막장 국회 규탄
 - ▶ 의원 징계안 접수되면 윤리위는 6개월 내에 신속처리토록 의무화하라

1. 사법/입법감시 법률전문 NPO/NPO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제21대 국회 3년간의 의정활동을 분석, 평가하면서, 3차년도(2022.5.30.~2023.5.29.) 국회의정활동을 평가항목별로 엄정하게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하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2쪽)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의원

의원	정당	선수	지역구	의원	정당	선수	지역구
조경태	국민의힘	5선	부산광역시 사하구을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초선	전라남도 여수시을
김도읍	국민의힘	3선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을	노용호	국민의힘	초선	비례대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3선	경기도 용인시을	배준영	국민의힘	초선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김상훈	국민의힘	3선	대구광역시 서구	서범수	국민의힘	초선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3선	서울특별시 종로구갑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초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갑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3선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초선	전라북도 군산시
이종배	국민의힘	3선	충청북도 충주시	안병길	국민의힘	초선	부산광역시 서구동구
한기호	국민의힘	3선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양금희	국민의힘	초선	대구광역시 북구갑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재선	서울특별시 노원구갑	유경준	국민의힘	초선	서울특별시 강남구병
권철승	더불어민주당	재선	경기도 화성시병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초선	전라북도 정읍시고창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재선	경기도 성남시분당구을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초선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
김성원	국민의힘	재선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재선	서울특별시 노원구병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초선	경기도 고양시정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재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초선	전라북도 김제시부안군
류성걸	국민의힘	재선	대구광역시 동구갑	이인선	국민의힘	초선	대구광역시 수성구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재선	전라남도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초선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송언석	국민의힘	재선	경상북도 김천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초선	충청남도 천안시병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재선	전라북도 원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이종성	국민의힘	초선	비례대표
여기구	더불어민주당	재선	충청남도 당진시	이주환	국민의힘	초선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재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초선	서울특별시 강동구을
이만희	국민의힘	재선	경상북도 영천시청도군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초선	경기도 광명시갑
이양수	국민의힘	재선	강원도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전봉민	국민의힘	초선	부산광역시 수영구
이철규	국민의힘	재선	강원도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이태규	국민의힘	재선	비례대표	전주혜	국민의힘	초선	비례대표
임이자	국민의힘	재선	경상북도 상주시문경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초선	서울특별시 관악구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재선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재선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	정희용	국민의힘	초선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철곡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재선	대전광역시 유성구갑	조명희	국민의힘	초선	비례대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재선	부산광역시 사하구갑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초선	광주광역시 북구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재선	전라북도 익산시을	조은희	국민의힘	초선	서울특별시 서초구갑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초선	서울특별시 강서구갑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초선	전라남도 여수시갑
권명호	국민의힘	초선	울산광역시 동구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초선	서울특별시 금천구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초선	전라북도 익산시갑	최연숙	국민의힘	초선	비례대표
김승수	국민의힘	초선	대구광역시 북구을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김예지	국민의힘	초선	비례대표	한무경	국민의힘	초선	비례대표
김용판	국민의힘	초선	대구광역시 달서구병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초선	경기도 고양시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전라남도 목포시	홍석준	국민의힘	초선	대구광역시 달서구갑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초선	경기도 김포시갑	<수상자명단은 다선순, 가나다순>			

제21대 국회 3차년도 의정활동 상위10명 성적

순위	의원명	의정활동	정당	지역구 · 비례	국감 출석률 (%)	국감 활동	통과대 표법안 (개)	통과공 동법안 (개)	법안통 과율 (%)	본회의 재석률 (%)	상임위 출석률 (%)	법안투 표율 (%)	가/감점 항목
		성적	선수		성적 (3)	성적 (17·12)	성적 (20)	성적 (10)	성적 (10)	성적 (12)	성적 (10)	성적 (18)	상임위소위/대 정부/윤리특위/ 비상설/ 예결특위 성적
1	이만희	94.74	국	경상 북도	100%	우수	10	39	34.55%	73.72%	100%	96.87%	상임위소위
			재	영천시 청도군	3	17	20	10	3.46	8.85	10	17.44	5
2	임이자	93.57	국	경상 북도	100%	우수	8	53	46.02%	72.99%	100%	95.58%	상임위소위
			재	상주시 문경시	3	17	18	10	4.60	8.76	10	17.20	5
3	김병욱	93.10	민	경기도 성남시	100%	우수	11	55	31.40%	67.15%	100%	99.45%	상임위소위
			재	분당구 을	3	17	20	10	3.14	8.06	10	17.90	4
4	윤준병	92.73	민	전라 북도	100%	우수	27	116	20.54%	72.26%	91.67%	99.08%	상임위소위
			초	정읍시 고창군	3	17	20	10	2.05	8.67	9.17	17.83	5
5	김상훈	92.65	국	대구 광역시	100%	우수	22	87	51.43%	64.96%	95.24%	84.35%	상임위소위
			3선	서구	3	17	20	10	5.14	7.80	9.52	15.18	5
6	김수홍	92.61	민	전라 북도	100%	우수	19	64	37.63%	73.72%	100%	100%	상임위소위
			초	익산시 갑	3	17	20	10	3.76	8.85	10	18.00	2
7	조승래	92.46	민	대전 광역시	100%	우수	7	56	43.04%	75.91%	100.	89.13%	상임위소위
			재	유성구 갑	3	17	18	10	4.30	9.11	10	16.04	5
8	전용기	92.32	민	비례 대표	100%	우수	14	77	28.57%	79.56%	96.77%	95.76%	상임위소위
			초		3	17	20	10	2.86	9.55	9.68	17.24	3
9	류성걸	91.88	국	대구 광역시	100%	우수	12	32	23.29%	82.48%	94.74%	84.35%	상임위소위
			재	동구갑	3	17	20	10	2.33	9.90	9.47	15.18	5
10	송언석	91.15	의	경상 북도	95.45%	우수	9	55	22.35%	89.05%	96.43%	81.03%	상임위소위
			재	김천시	2	17	20	10	2.24	10.69	9.64	14.59	5

2. 제21대 국회 3차년도(21-3),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균성적 : 64.52점

«국회의장 김진표 의원 등을 제외한 293명 기준»

(1) 의정활동 종합성적 : 64.52점 (D학점)

제21대 국회 3차년도 종합의정활동 성적은 평균 **64.52점**(2차년도 **68.46점**, 1차년도 **평균 67.74점**)이었다. 국회의원 평가기준에 의해 평점을 매긴 결과, 60점 미만의 종합의정활동 낙제점 의원은 114명이나 되었다.

293명의 국회의원 중 90점 이상이 12명(2차년도 16명, 1차년도 27명)이었다. 80점대가 37명(2차년도 54명, 1차년도 40명), 그리고 70점대가 58명(2차년도 59명, 1차년도 66명)이었다. 가장 많은 의원이 분포하고 있는 60점대가 72명(2차년도 73명, 1차년도 71명)이었다. 60점 미만의“F학점”의 의정성적을 얻은 의원은 모두 114명(2차년도 76명, 1차년도 94명)이었다. 60점 미만대 중에서도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의원은 52명(2차년도 29명, 1차년도 39명)이나 되었다.

«제21대 국회 3차년도 의정활동 종합성적 분포»

구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50점 이상~60점 미만	50점 미만	계
학점	A	B	C	D	F		
의원수	12	37	58	72	62	52	293

(2) 교섭단체별 성적 : 국민의힘 성적이 65.79점으로 높아

국민의힘 의원의 평균점수는 65.79점으로 더불어민주당 64.65점보다 1점 정도 앞섰다. 비교섭 정당과 무소속의 경우에는 52.11점으로 평균 64.52점보다 크게 밀돌았다.

«교섭단체별 제21대 국회 3차년도 의정활동 종합성적»

구분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90점 이상	5	7	0
80점 이상~90점 미만	21	16	0
70점 이상~80점 미만	38	20	0
60점 이상~70점 미만	42	27	3
50점 이상~60점 미만	37	20	5
50점 미만	27	20	5
계	170	110	13
평균	64.65	65.79	52.11

(3) 당선횟수별 분석 : 재선의원의 성적이 67.91점으로 가장 높아

당선횟수별로 초선의원의 경우에는 90점 이상이 5명이었고, 평균 66.50점으로 재선의원보다 낮았다.

재선의원의 경우에는 90점 이상 6명이었는데 평균의정활동성적은 67.91점으로

가장 높았다. 재선의원들이 의정활동을 고르게 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선의 경우에는 58.94점, 4선의 경우에는 52.60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5선이상의 다선의원의 경우에는 56.93점으로 조금 높게 나왔다.

《당선횟수별 제21대 국회 3차년도 의정활동 종합성적》

구분	당선횟수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90점이상	5	6	1	0	0
80점이상~90점미만	24	9	3	0	1
70점이상~80점미만	32	17	6	2	1
60점이상~70점미만	42	14	10	4	2
50점이상~60점미만	34	12	8	3	5
50점미만	17	10	13	9	3
계	154	68	41	18	12
평균	66.50	67.91	58.94	52.60	56.93

(4) 지역별 : 전라북도가 76.56점으로 높아

지역별로 전라북도지역 출신 국회의원의 평균 의정활동점수가 76.56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비례대표 의원들의 평균의정활동점수가 63.90점으로 전체 평균 64.52점보다 낮게 나왔다. 지역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적은 제주지역으로 의원 평균 성적이 75.52점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경우는 경남지역으로 58.59점이었다. 그다음은 충북지역으로 60.28점이었다.

《지역/비례대표별 제21대 국회 3차년도 종합의정활동 종합성적》

선거구	수상의원	지역구정원	수상비율	지역별 평균
서울특별시	10	47	21.28%	62.60
부산광역시	7	18	38.89%	68.15
대구광역시	7	11	63.64%	73.87
인천광역시	1	13	7.69%	62.18
광주광역시	2	8	25.00%	68.48
대전광역시	1	7	14.29%	61.38
울산광역시	2	6	33.33%	67.16
세종특별자치시	0	2	0.00%	69.85
경기도	8	56	14.29%	61.00
강원특별자치도	3	8	37.50%	65.39
충청북도	2	8	25.00%	60.28
충청남도	2	11	18.18%	62.38
전라북도	6	9	66.67%	76.56
전라남도	5	10	50.00%	73.22
경상북도	4	13	30.77%	69.14
경상남도	1	16	6.25%	58.59
제주특별자치도	2	3	66.67%	75.52
비례대표	12	47	25.53%	63.90

3. 평가요약

제21대 국회 3개년간의 국회의정 평가활동을 주관한 **김대인 법률연맹 총재**는 “국가정책의 결정과 입법은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책무**이며, 특히 법률안 처리에 대해서 더욱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국가정책과 법안 처리 등에 찬반 가부간 불참/방기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국민의 최고 대표기관으로서 **입법, 재정통제, 국가 5부의 권력견제** 등 **본분에 충실해 주기**를 기대하며, **국민은** 공권력을 위임한 **주권자로서**, 국가재정을 부담하는 **납세자로서** 모든 국가기관(공직자)들이 오직 국민과 기업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부강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데 **봉사하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고 역설하고,

남은 1년, 21대 국회가 충실한 국회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1) “다수의 전횡이 아닌 소수자 보호의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 (2)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칙에 충실한 국회, (3) 국회 4대 기능회복 등 헌법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국회**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또한 **국회가 정의로운 법을 만들려면 우선 전문성 제고와 충실한 토론**이 필요하며, 전문위원과 다양한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애국심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내용도 모른 채 투표**를 하는 **통법부 관행**은 즉시 철폐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제21대국회 3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헌정대상위원회의 평가기준표》

평가항목(배점)		성적 산출식
(01) 본회의(전체) 재석(12)		○ 재석률X12점 / 재석=개의+속개+산회+출석
(02) 상임위원회 출석(10)		○ 출석률X10점
(03) 법안표결 참여(18)		○ 투표율(표결참여율)X18점
(04) 법안통과율(10)		○ 법안통과율X10점 3년간 본회의 통과 대표발의/대표발의건수
(05) 발의 법안 통과 성적 (30)	(A) 대표발의(20)	① 가결된 대표발의법안 1개X4점 ② 대안반영폐기된 법안 중 대표발의 법안 1개X2점 ③ 대표발의지만 단순용어 순화 등 문제 법안 1개X1점 ①+②+③ 합산한 점수를 최대20점까지 인정함.
	(B) 공동발의(10)	① 가결된 공동발의법안 1개X0.5 ② 대안반영폐기된 법안 중 공동발의 법안 1개X0.5점 ①+② 합산한 점수를 최대10점까지 인정함.
(06) 국정감사 현장출석(3)		○ 100%는 3점, 90%이상~100%미만 출석 2점, 60%이상~90%미만은 1점, 60%미만은 0점
(07) 국정감사 우수의원(17)		○ 국정감사우수의원상(위원장상) 수상시 17점 ○ 상위 50%까지 준우수의원(위원장)으로 12점
(08) 대정부질문 가점(+2점)		(0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준에 따라 -2점~2점)
(10) 윤리특별위원회 감점(감점해당자 -3점)		(11)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기준에 따라 -3점~3점)
(12) 상임위원회 소위활동(6회 이상 회의 소위만 기준에 따라 0점~5점)		

①국정감사 “현장모니터링의” 법적근거와, ②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③헌정대상 등 의정감시의 “7종 국익(國益)기능”

① 국감현장모니터링은 국민주권 원리, 헌법(제50조)국회법(제75조)국감조법(제12조)에 근거한 의사공개원칙에 따른 권리다
 ② 대학생단체 등 270개 NGO연대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5년된 국감모니터 전문단체이며, 그 주관 단체인 ③ 법률소비자연맹은 33년된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NGO/NPO로서, 국회사무처(유인태/하단참조)가 방해 하여도, 이미 지난 십수년 동안 ‘온라인 모니터만으로’ 시행해온 의정종합평가(대한민국 헌정대상)가 국내외적으로 정착<미국/일본/영국 등의 NGO/국회의원/교수/변호사들의 롤 모델이 됨>되었듯이, 현장 모니터 방해에도 모니터/평가는 할 수 있다. 다만 모니터 방해는 7종 국익기능을 저해시키는 반국익/반민주 행태다.

1. 국회(의원)의 민주성 상징 --대한민국 국회엔 24년<주관단체는 32년>동안 “단 한번의 공정성 시비없이” <혹간 편해/비방보도는 법제/윤리적 근거없는 가짜뉴스로 즉시 드러나곤 함> 국회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모니터/평가 해온 헌정대상(의정종합)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활동, 즉 시민의 권력 감시가 실질적으로 작동된다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랑(공지)이며 당당한 민주성 상징이 된다.

2. 국회(의원)의 존재감 회복 --국민들은 TV등 언론을 통하여 국회의원들이 싸질하는 것만 보다가, 우수한 스펙을 가지고, 국민복을 위하여 국정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대학생이나 시민(대표)들이 비로소 국회의원의 노고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와 국가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가 형성되게 된다.

3. 법치주의를 지키는 기능 --권력은 부패하는 속성이 있고,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Sir. Acton> 권력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예방/척결하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시민단체들이 모니터/평가/공개하는 것은 법치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권리요 책무다.

4. NGO 정책과 국정 협치 --시민사회단체(NGO)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확인되는 국정상황을 이해하여, 국가사회의 거버넌스(Governance)적 정책개발과 건전한 비판과 협력을 할 수 있게 된다. UN이 정부(GO)의 주장만이 아닌, 비정부 민간기구(NGO)를 제도적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공동발전을 위한 협동원리이며 거버넌스(협치)인 것이다.

5. 시민 대학생들 정치학습 --청년/대학생 및 시민들이 국감현장을 직접 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학습하게 된다. 정해진 룰(rule)에 따라 국정현안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을 들으며, 나라사랑/나라걱정을 하게 되는 등 민주정치 체험학습을 하게 된다.

6. 국감위원의 긴장감 조성 --감사현장에 NGO대표가 불참한 2020~21년도 국감은, 텅빈 감사위원석, 짧은 국감일정-형식적 소화, 국가존망과 민생외면, 부정부패를 비호/감싼다는 의혹속에 여/야간 막말과 난장판이 연출되었는바, NGO의 현장모니터는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다는 긴장감속에 충실감사를 하도록 압박하는 기능이 매우 크다.

7. 피감기관의 긴장감 조성 --피감기관이 국감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모르쇠’ 답변이나 ‘불성실하게 버티기’ 답변을 하기도 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때 감사현장에서 시민단체(NGO모니터단)가 피감기관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감기관을 긴장케 하여 겸손하고 정직하게 수감하게 만든다.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가 조폭·홍위병 같은 폭력·직권남용(입증 충분)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은 물론 헌법·행정법·국회법 등을 위반(2019.10.어떤 행정절차도 없이)하며, 24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33년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을 모함·방해를 자행! 손해배상과 업무방해 등 민·형사적 법적조치를 조만간 취할 예정이다.



자유투표를 강조합니다 (국회법 제114조의 2)

“의원은(국민의대표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 의정총평 및 헌정대상 시상식에 즈음한 말씀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헌정대상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김대인** 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시는 국회의원님께 축하와 감사말씀을 드리며, 제21대 국회 3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회와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 한 말씀을 올립니다.

국회(국회의원)는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증진해달라는 막중한 책무를 위임받은 대리인·수탁자로서, 국가발전과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명령받은 **모든 국가기관 모든 공직자들**(머슴들, Public Servants)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책무를 수행하는 도구로서, **각종 혜택과 특권(권한)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음에도**, 부패척결은커녕 부정비리에 연루되거나, 나태와 무사안일에 빠지거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분망하지만, 포퓰리즘의 결과로 결국은 **국가예산(혈세)낭비**, **국민 편 가르기**(분열과 갈등조장), 악법인줄 모르거나 알고도 ‘좋은 법, 필요한 법’ 이라고 국민을 기망하면서 악법추진에 열을 올리는 대국민 배임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 예산결산·정부각처 견제, 법제정·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 기능과 역할은 의지만 있다면, **‘법과 정의’가 존중되는 일등국가**를 만들 수 있음에도, ‘국회가 힘이 없다, 상대 당에서 발목 잡아서 못한다, 차기 선거에 공천·재입성하려면 **지역구 등을 행거야 한다**’는 핑계로 눈치만 보다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막강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세비만 타는 나태한 의원은 없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법률연맹**을 비롯한 **국정감사NGO모**

니터단, 국회의정종합모니터단, 사법개혁NGO네트워크 등의 단체와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 등 전국규모의 NGO들은 열심히 의정활동에 충실한 의원님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힘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시민이 의정활동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의 막중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원님을 12개 항목의 평가기준에 의해 선정하여 드리는 유권자와 시민단체의 격려로서, 의정종합평가와 헌정대상 선정에 사용된 평가기준은 국회의원 여러분의 충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주요지표이자 바람직한 의정활동의 좌표로서, 그 성적결과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2024.4.총선)에 유익하게 활용되리라 사료됩니다.

연맹의 평가방법은 KBS 특집보도, 미주 중앙일보의 LA시의회 평가에 도입, 세계정치학회 발표, 미국 영국 일본 등 국회의원들과 정치학자들의 극찬을 받았고, 결과는 올해에도 서울신문 등에 특집보도되었습니다.

조사·분석·계량화 작업 등을 기초로 국회의원 개인당 평점을 매긴 결과, 동일기준에 의한 평가가능 의원 293명의 평균 성적은 100만점에 64.52점에 불과하였습니다. 대학교 학점으로 치면 ‘D’ 학점입니다.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회법에 월 3회 하도록 되어 있으나, 14개 상임위원회의 25개 법안심사소위원회 중 어느 한 곳도 이법을 지킨 소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역시 월 2회 회의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청원심사 소위는 1년 동안 고작 4차례 2시간 42분 회의를 하였으며, 국민이 낸 소중한 청원은 1건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20,094건이라는 역대 최다의 법안 발의를 하였지만 수정가결된 경우는 4.76%에 불과했으며, 현역의원 중 71명이나 가결된 대표발의법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리된 의원발의법안은 대부분 책임소재가 불명한 “상임위 대안”으로 만들어져서 폐기되었는데 무엇이 반영되고 왜 폐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현재 미개정된 위헌법률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법률조항이 51개나 있는데, 이중에서 20개가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법률안이었습니다. 위헌심판이 내려져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지도 모호합니다.

3년간 전자투표를 한 2053건 중 본회의 법안처리시에 토론을 거친 것은 겨우 60건에 불과했습니다. 4선이상의 의원은 법안투표율은 66.89%에 불과했습니다. 출석도장은 열심히 찍어 수당까지 챙기는데,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국회의원 없는 텅빈 본회의장이었습니다. 본회의 재석률은 70.27%에 불과합니다.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회의가 중단되거나 의결사항을 잠시 연기하는 사례가 회의록에 기록된 것만 해도 32개 소위에서 79회 발견됩니다. 사실은 더 많은 것이나 기록이 제대로 되는 지 국민들은 알 수 없습니다.

지난해 2021회계연도 결산 570.5조원을 상임위 결산소위의 회의시간으로 보면 10분당 2조원꼴로 결산한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예산안이나 결산의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예삿일이 되었습니다.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가동했으나, 성과는 없었습니다.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는 안전도 협의 못한 채 기간연장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지난해 정권교체후 尹정권(5개월)~文정권(5개년) 국감 종합평가는 “팬덤 정쟁 D학점”이었습니다. 정쟁국감을 탄식하는 유권자들이 국회해산을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징계청구는 하나하나, 국회윤리특위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제21대 국회, 윤리특위 심사의 징계처리는 사실상 ‘0’ 건 즉 한건도 없었습니다. 막장(?) 국회를 조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보도자료 223매로 갈음합니다.

그럼에도 포지티브운동 이념상 본 연맹이 객관적 평가지표에 의해 헌정대상 의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선진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국회이관이 추진되어야 하고, 5.16 이전과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국회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원심사와 법안심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소위위원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정감사를 국정감사법대로 상임위원회별로 상시국감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금일 수상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축하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8월 16일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총재
헌정대상위원회 상임위원장

金 大 仁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역할 · 성과

《2023국정감사NGO모니터단 1차 준비모임 : 2023. 8. 16.(수),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① **국정감사는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실제로‘상임위원회’)가 여·야당의 구분 없이 국회의 4대기능인 국민대표기능·입법기능·재정통제기능·정부견제기능을 집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5부와 지자체까지의 모든 국가기관을 점검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헌법상의 권한**(헌법 제61조)이자 **책무**인 바,

- ① **헌법** 제61조 제1항은“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여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한을 헌법에서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② **국회법** 제128조 및 제129조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보고·서류제출요구 및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요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127조는 그 밖의 자세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정감·조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③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13대 국회에서 국정감사제도가 부활되면서 새로이 제정된 법률로서 국정감사와 조사의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국회에서서의 증언·감정법 등과 함께 국정감사의 기본법》

제헌국회(헌법 제43조)부터 시행, 군사정부 당시(유신헌법 1972. 12. 27., 국정감사 폐지와 국회권한의 대폭적인 축소)에 중단되었다가 1987년 민주화(6·10)운동에 따라 현행헌법에서 부활하여 제13대 국회 때(1988년)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는 세계 유일·독특한 제도로써, 미비·일천한 민주제도하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2차 대전이후 정치적(민주화)·경제적(세계 10위권 대국)으로 성공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 《현행 국정감사제도의 특징》 ① 국정감사 대상범위의 포괄성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국정감·조사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에서“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감사를 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의 대상범위를 국정전반으로 하고 있다.
- ② 국정감사 실시의 정기성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따라서 국정감사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정기적으로 불특정기간에 실시되는 국정조사에 비하여 정기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 ③ 국정감사의 상임위원회중심주의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국회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계획서의 작성이나 국정감사결과보고의 주체는 상임위원회이다.
- ④ 국정감사의 공개원칙 국정감사는 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해당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국정감사의 강제성 국회의 국정감사는 정부 등 수감기관에 대하여 여러가지 수인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강제력을 가진다.

② **국정조사**(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한 국정조사를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실시)와 달리 여·야당 합의가 없어도 매년 일정기간 동안(정기국회 전 30일, 다만 국회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회기내 실시) 모든 국가기관의 국정을 감사하여, ① 주권재민, 법치, 민주주의국가임을 확인하고, ② 모든 국가기관의 부정부패 예방과 치유를 하면서, ③ 합법적·실효적으로 야당과 NGO와 언론 등이 권력을 감시 견제 가능케 했으며, ④ 국가사회 구석구석의 병폐와 문제를 점검·척결케 하고, ⑤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의 낭비와 비효율 및 잘못된 법·제도·정책을 시정 촉구함으로써, **국회 4대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국가사회를 발전시켜온 참으로 다행스러운 민주적 장치**였으며,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의회민주주의 선진국가를 제외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수출할 만한 민주정치의 썩기·보루였습니다.

③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15대 국회말부터** 청년대학생 봉사자와 시민사회단체·전문가단체로 구성된(이미 지부 지회까지 합쳐 1천개~3천개가 훨씬 넘게 참여하고

있지만 고유명사처럼 '270개 NGO'로 고착화됨) 25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기구로서, 헌법(전문, 제1조, 제24조)에 명시된 헌법제정·개정권자요, 주권자요, 유권자인 민주시민의 연대체로 기본권인 인간존엄과 정보에의 권리·알권리(헌법 제10조, 제21조 등)는 물론, 국회법(제75조), 국정감사법(제12조)상의 의사공개원칙에 의거하여, 서울지역은 물론 제주, 부산, 대구, 광주, 세종 등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에 매 피감기관마다 모니터위원(3~5명씩)을 파견(c-19이전)하여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 현황과 질의응답 내역을 날날이 모니터링하면서, 국회방송 NATV와 인터넷 의사중계 등을 통한 모든 상임위의 감사와 299명 국감위원(국회의장 제외)의 홈페이지를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분담·모니터·평가(국감전후 약 3개월정도 전력투구)해 왔습니다.

■ 국정감사모니터링의 목적

① 충실한 국정감사활동 유도

국정감사는 1988년 이후 부활한 국회의 실질적 권한 중의 하나로서, 감사제도의 의의와 가치를 인식하고 그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 하에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국민의 복리를 위해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② 국회의원 감사활동의 공정한 평가

국정감사 모니터링활동은 국회의원의 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한 시민과 NGO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를 통하여 단순히 지켜보기만이 아닌 구체적인 감시·견제기능을 한다.

③ 감사활동에 대한 알권리 충족

국정감사는 공개가 원칙으로, 감사 공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정감사모니터활동은 국회의원의 감사활동 전반을 납세자요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는 기능도 한다.

④ 시민교육·운동의 정책 개발

국정감사 모니터링활동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감사활동을 통해 얻어진 국가5부 전반에 대한 정책과제 수행현황과 문제점을 적시·적절하게 파악하여 국가발전과 국가경제 살리기, 그리고 각종 국가정책 현안해결을 위한 시민교육 및 시민운동의 정책자료를 개발하는 기능도 한다.

⑤ 민주시민의 정치학습의 장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 존재가 필수적인 바, 민주시민의 정치훈련 학습의 장으로서 국정감사 모니터링활동에 무보수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정치과정을 체험하며 훈련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 국정감사모니터활동의 근거

① **헌법 전문** 「헌법」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안으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규정하여 국가공동체의 근본규범인 헌법제정권력자임을 천명하고 있다.

② **헌법 제1조** 「헌법」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주권재민을 선언하고 있다.

③ **헌법 제24조** 「헌법」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하여 유권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④ **국회법과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 「국회법」(제75조)과「국정감사 및조사에관한법률」(제12조)은 의사공개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⑤ **민주시민의 공정성감시 권리·책무** 민주시민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강제적인 납세, 국방의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국가생활의 전영역에 있어서 공정성 감시 책무를 가지고 있다.—국민은 주권자·유권자·납세자·소비자·당사자로서 형사소송법 제223·234조, 소비자기본법 제4조 등 고소·고발권, 알권리·들을 권리 등 각종 청구권 등 관계법에 의거한 권리의무와 책임이 있다

④ **국정감사모니터단의 구성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애국적 헌신적인**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활동을 통해 고질적인 병폐인 국정감사 전후의 후원회 행사를 척결하였으며, 국정감사의 충실화를 이루어 국정감사 도중 여·야간의 국정감사 외적인 설전과 물리적 행사가 현격히 줄어 들었고, 인터넷 의사중계 등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국정감사 후 공정·충실한 평가를 통한 국정감사 모범·우수의원상은 포지티브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국회의정활동의 ‘노벨상’** 과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선거에 있어 각 정당의 유력한 공천기준이 됨은 물론, **유권자 선택(판단)의 준거가 되고, 공직임명의 자료**가 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정치학자들의 학술연구대상**이 되고, 우리 모니터단의 보도자료는 국회 국정감사활동 전체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⑤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5년차인 올해(21대국회 4차년도)에도 제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충실한 국정감사를 해 나가도록 충실한 모니터링을 하는데 많은 참여와 연대를 기대합니다.